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시행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 내용의 일부를 축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제도 도입, 교육훈련의 실시 및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7975호, 2021. 3. 23. 공포, 2022. 3. 24. 시행)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기준, 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한편, 감염병 확산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 사업장 등에 지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약식교통영향평가 근거규정 마련(안 제13조의2)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에 건축하는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시간적·공간적 범위를 완화하는 등 약식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안 제13조의9, 별표 1의2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제도 도입에 따라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

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교육·훈련의 종류와 시기(안 제13조의10, 별표 2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와 시기를 정함

라.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안 제13조의11, 별표 6 신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조직·인력·장비 등을 갖추는 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지정내용을 고시하도록 하며, 운영실적을 보고하도록 함

마. 부담금의 경감(안 제24조)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으로 지자체장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경감이 가능토록 함

바. 보고 및 자료제출 방법 및 내용(안 제36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영향평가 업무기관에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사전에 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교통영향평가 업무기관이 제도 개선 시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사. 협회 업무 위탁(안 제37조)

교통영향평가 업무 중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 신청 접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관리, 대행 실적 공고 등 교통영향평가협회로 위탁할 업무를 정함

아.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38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및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5항 본문 중 “평가항목 및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과”를 “평가항목·내용의 세부적인 사항, 내용의 일부를 축소할 수 있는 교통영향평가 및”으로 한다.

제13조의9부터 제13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9(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기준 등)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3조의10(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 ①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종류·시기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정당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시기에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교육·훈련의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의11(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법 제32조

의4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교통영향평가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마.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 관련 교육훈련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별표6에 따른 인적·물적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등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3년마다 심

사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교육·훈련계획의 적합 여부
2. 교육·훈련 시설 및 인력의 보유수준과 활용도
3. 교육·훈련 개발·운영체계 및 업무성과
4. 교육·훈련 서비스의 적정성 및 만족도

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운영실적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제5항 중 “시장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을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난으로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으로,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보고 및 자료제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이하 “교통영향평가 업무기관”이라 한다)에게 보고 및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정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통영향평가 업무기관에게 필요한 조치 또는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1.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
3.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보유 등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통영향평가 업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신청 접수 및 변경등록
2. 법 제2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폐업 신고 접수 및 관련내용의 통보·공고
3.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의 접수·확인·관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4. 법 제51조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대행실적 보고 접수·확인·관리 및 교통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 공고

5.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③ 협회는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半期)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3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32조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증명서 발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32조의3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및 인정정지에 관한 사무

2의3. 법 제32조의4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3.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별표 1의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에 관한 특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13조의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권한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제13조의9 관련)

구분 기술자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급 평가자	가. 교통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교통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교통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3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1) 관련 학과의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 학과의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12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무원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교통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5년 이상의 교통영

		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고급 평가자	가. 교통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교통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1) 관련 학과의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 2) 관련 학과의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9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12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무원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교통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3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중급 평가자	가. 교통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의 교통영향	1) 관련 학과의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교통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교통 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 는 사람 2)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6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 는 사람 3)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 를 가진 사람으로서 9년 이상 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이나 정부출연연구기 관의 근무자로서 교통 분야에 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 무기간 중 2년 이상의 교통영 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 람
초급 평가자	가. 교통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교통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통 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1) 관련 학과의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 2)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 는 사람 3)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 를 가진 사람으로서 6년 이상

		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이나 정부출연연구기 관의 근무자로서 교통 분야에 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	--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란의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으로 한다.

2.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란의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교통공학, 교통학, 도시계획학, 도시공학, 교통계획, 토목 또는 건축 등 교통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과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3. 위 표에서 교통영향평가 실무기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가. 교통영향평가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교통영향평가대행업체에서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

나.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검토·심의에 관한 업무 또는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련된 용역의 감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교통 관련 연구기관에서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검토·심의에 관한 업무 또는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련된 용역의 감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

4. 외국인기술자는 당사자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 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교통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 (제13조의10제1항 관련)

1. 종류

- 가. 최초교육 :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본 소양 및 관련 법령·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 나. 계속교육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2. 시기 및 시간

구분	대상	시기	시간
가. 최초교육	1) 특급 평가자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등급 인정을 받은 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1년 이내	40시간
	2) 초급·중급·고급 평가자		35시간
나. 계속교육	교통영향평가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최초교육 또는 계속교육을 이수한 사람	최초교육 또는 계속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20시간

비고

- 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기술인력의 등록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최초교육 또는 계속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교육을 받아야 한다.
- 나.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정해진 시기에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3. 내용 및 방법

- 가. 내용 : 교육·훈련의 내용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수행하는 교통영향평가 업무, 기술자의 등급에 따라 교육과정 및 내용을 달리하여야 하며(다만, 최대 2개

등급까지 동일한 교육과정 및 내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론·현장학습 및 실습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나. 방법 : 교육과정에 따라 집합교육, 이러닝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4. 그 밖에 교육·훈련의 세부 내용·방법 및 교육·훈련시간의 인정 등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혼잡수준 결정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1. 평균 통행속도에 따른 도시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의 혼잡수준 결정기준

가. 도시고속도로

(단위: km/h)

편도 4차로 이상
30 미만

나. 간선도로

(단위: km/h)

편도 4차로 이상	편도 3차로 이하
21 미만	15 미만

2. 차량당 평균 제어(또는 운영)지체시간에 따른 교차로의 혼잡수준 결정기준

(단위: 초)

신호교차로(평균제어지체시간)	무신호교차로(평균운영지체시간)
100 이상	50 이상

비고: 차량당 평균제어(또는 운영) 지체시간이란 도로용량편람(국토교통부가 가장 최근에 발행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차량당 평균 제어(또는 운영) 지체를 말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비치 또는 관리하지 않거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1호	500만원
나. 법 제2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1호	500만원

다.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2호	1천만원
라.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다른 계약과 분리하지 않고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변경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3호	1천만원
마.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4호	500만원
바. 법 제2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5호	500만원
사. 법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제3항	10만원
아.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이내에 같은 조에 따른 혼잡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4항	4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자. 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6호	1천만원
차. 법 제5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대행실적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	200만원
카. 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7호	500만원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별표 6] 신설

교통영향평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제13조11관련)

구분	지정요건
1. 인력 및 조직	가. 교통영향평가 교육훈련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을 갖추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교수요원을 4명 이상 확보할 것 1) 교통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강의 또는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통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강의 또는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특급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 다.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 교육생 관리 등을 위한 전담인력을 1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2. 교육시설 및 설비	가. 20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시설과 설비를 갖추는 것 * 해당 교육시설 및 설비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이상 임차할 것 나. 온라인 등 비대면 교육이 가능한 교육설비를 갖추는 것
3. 교육과정 및 운영	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기관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업무 규정을 갖추는 것 나. 교육방식, 연간 교육차수, 교육인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과정이 교육목적 달성에 적합하게 설정되었을 것 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① ~ ④ (생략)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u>평가항목 및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u>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제6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 -- <u>평가항목·내용의 세부적인 사항, 내용의 일부를 축소할 수 있는 교통영향평가 및</u> ----- ----- --. ----- ----- ----- -----.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3조의9(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기준 등)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기준</u> ”은 별표 1의2와 같다.
<u><신 설></u>	제13조의10(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 ①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u>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종류·시기 등은</u> 별표 2와 같다.

<신 설>

②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정당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시기에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교육·훈련의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의11(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법 제32조의4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

된 연구기관

나.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교통영향평가에 관
한 협회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교통영향평
가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있는 학교

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교
통영향평가와 관련되는 업
무를 수행하는 법인

마.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 관
련 교육훈련기관 또는 단
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별표6에 따른 인적·물적 기
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
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
평가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때
에는 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

제24조(부담금의 경감) ① ~ ④
(생략)

⑤ 법 제38조제3호에 따라 시장
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

표자 등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
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
평가교육훈련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
부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 3년마다 심사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교육·훈련계획의 적합 여부
2. 교육·훈련 시설 및 인력의 보
유수준과 활용도
3. 교육·훈련 개발·운영체계 및
업무성과
4. 교육·훈련 서비스의 적정성
및 만족도

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운영
실적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부담금의 경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시장
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난으

른 전문회의시설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⑥·⑦ (생략)

<신설>

로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국제회의산
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인정하는 ----

----.

⑥·⑦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보고 및 자료제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
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자, 교통
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이
하 “교통영향평가 업무기관”이
라 한다)에게 보고 및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정하여 보
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
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통영향평가 업
무기관에게 필요한 조치 또는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1.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
3.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

제37조(권한의 위임) (생략)

<신설>

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
인력 보유 등 등록요건에 관
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 업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통영향평가 업무기관은 제
2항에 따른 조치 또는 제도 개
선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위임 및 위탁)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법 53조제1항에 따른 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대행자의 등록 신청 접수
및 변경등록

2. 법 제28조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대행자의 폐업 신고 접수
및 관련내용의 통보·공고

3.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 설>

<신 설>

신청의 접수·확인·관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4. 법 제51조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대행실적 보고 접수·확인·관리 및 교통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 공고

5.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③ 협회는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半期)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3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u>1.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u> <u>2. 법 제32조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증명서 발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무</u> <u>2의2. 법 제32조의3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및 인정정지에 관한 사무</u> <u>2의3. 법 제32조의4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u> <u>3.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연 락 처	(044) 201 - 3812